

제2595호
2018. 09. 05.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공 보 실 장 신 선 애
 전화: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 제2018-92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
- 제2018-93호 :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5차변경)인가 고시 3
- 제2018-94호 :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세출 결산 고시 5

● 공 고

- 제2018-63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2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92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황학동 2015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58-8	2018.09.05.	난계로17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난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을지로5가 270-25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5길 18	2018.09.05.	동호로35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93호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5차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2호(2008.01.31.)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중구 고시 제2009-12호(2009.03.20)로 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4호(2011.06.23)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및 중구 고시 제2014-14호(2014.02.26)로 경미한 변경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2012-78호(2012.08.08.)로 사업시행 인가, 중구 고시 제2016-52호(2016. 5. 25.)로 정비구역(경미한 변경)결정, 중구 고시 제2014-109호(2014.12.12.)로 사업시행(1차)변경인가, 사업시행(2차)변경인가(2016. 9. 9.), 중구 고시 제2016-123(2016.12.20.)로 사업시행(3차) 변경인가 및 중구 제2017-28호(2017.04.19.)로 사업시행(4차)변경인가된, 서울시 중구 신당동 85번지 일대의 「신당 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5차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50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시 중구 신당동 85번지 일대 8,119.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거부
 - 나. 주된 사무소의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90길 36(2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8. 09. 05.
6. 주요변경 사항
 - (1) 소공원1 : 무학봉 근린공원 계단 삭제 및 파고라 위치 이동
 - (2) 101동 남측 보강토옹벽 변경 등 : 성토식(옹벽1단) → 절토식(옹벽2단)
 - (3) 음식물 전용수거공간 변경 : 지하주차장1층 → 옥외이동
 - (4) 실외기실 및 발코니, 다용도실 마감변경 : 에폭시도장, 결로방지 페인트 등
 - (5) 지하층 천정마감 변경 : 암면뽀칠 → 흡음뽀칠(소음 방지)
 - (6) 단열재 결손연결 등
 - (7) 시트방수 및 보호판 적용, 트렌치삭제 등
 - (8) 기타 경미한 사항의 변경

7.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무상귀속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

종류	명칭	위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			규모(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			시행내 용의범 위	저촉 토지 등의 내역				비용부담			비고
					면적 (㎡)	폭원 (m)	연장 (m)		토지(㎡)		건축물(㎡)		부담 자	부담 내용	부담 액	
									필지	면적	동수	연면적				
총 계									47	1,679.2	13	889				
도로 합계									15	946.4	5	501	조합	설치후 무상귀속	전부	
도로	소로 2-B	신당동 85-240	~	신당동 85-478	946.4	6~10	102	전부	15	946.4	5	501	조합	설치후 무상귀속	전부	
소공원 합계									28	364.4	5	222				
공원	소공원1	중구 신당동 85-549	일원		284.7	-	-	전부	23	284.7	3	80	조합	설치후 무상귀속	전부	
공원	소공원2	중구 신당동 85-288	일원		79.7	-	-	전부	5	79.7	2	142	조합	설치후 무상귀속	전부	
근린공원 합계									4	368.4	3	166				
공원	근린공원	중구 신당동 845-3			368.4	-	-	전부	4	368.4	3	166	조합	설치후 무상귀속	전부	

나. 무상양여 (용도 폐지되는 시설)

종류	명칭	위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			규모(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			저촉 국.공유지			무상양여
					면적 (㎡)	폭원 (m)	연장 (m)	구역편입 (㎡)	정비기반 시설편입(㎡)	실제이용 (㎡)	면적 (㎡)
도로	소로 3-A	신당5동 85-551	~	신당5동 85-537	202	6	41	202	202	202	195

8. 관련도서 :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 (☎02-3396-5724) 및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02-2237-4881)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94호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세출 결산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승인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세출결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결산개요

- ▶ 예산현액 506,544,636,400원(전년도이월금 54,240,420,40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09,633,753,191원이고
지출액은 357,308,959,246원이며
- ▶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2,324,793,945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결산상 잉여금 152,324,793,94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4,921,348,080원
 - 사고이월 34,357,139,37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3,202,297,15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844,009,342원이다.

2. 세입·세출 예산집행 상황

가. 2017회계연도 결산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출 결산액 (C)	결산상 잉여금 (다음도아행) (D=B-C)	다음연도 이월내역				
					명시 이월액 (E)	사고 이월액 (F)	보조금 집행액 (G)	순세계 잉여금 (H)=D-E-F-G	
총계	506,544,636,400	509,633,753,191	357,308,959,246	152,324,793,945	14,921,348,080	34,357,139,370	3,202,297,153	99,844,009,342	
일반 회계	430,644,961,400	434,079,480,355	338,316,703,205	95,762,777,150	12,086,704,080	28,429,712,450	3,141,616,733	52,104,743,887	
특별 회계	75,899,675,000	75,554,272,836	18,992,256,041	56,562,016,795	2,834,644,000	5,927,426,920	60,680,420	47,739,265,455	
	의료급 여기금	248,930,000	262,826,330	194,244,570	68,581,760		54,684,320	13,897,440	
	주요 특	1,805,166,000	1,802,110,338	24,400,000	1,777,710,338			1,777,710,338	
	주차장	72,851,273,000	72,497,230,335	18,773,611,471	53,723,618,864	2,834,644,000	5,927,426,920	5,996,100	44,955,551,844
	기타 시설	994,306,000	992,105,833		992,105,833				992,105,833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400,340,079,000	430,644,961,400	484,845,324,945	434,079,480,355	50,765,844,590
지방세수입		123,326,562,000	123,326,562,000	126,249,237,100	122,607,477,000	3,641,760,100
지방세	지방세	123,326,562,000	123,326,562,000	126,249,237,100	122,607,477,000	3,641,760,100
	보통세	122,504,562,000	122,504,562,000	122,701,146,340	121,842,369,050	858,777,290
	지난년도수입	822,000,000	822,000,000	3,548,090,760	765,107,950	2,782,982,810
세외수입		74,274,325,000	74,274,325,000	126,089,016,020	78,964,931,530	47,124,084,490
경상적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53,900,466,000	53,900,466,000	55,304,439,880	55,083,154,650	221,285,230
	재산임대수입	600,655,000	600,655,000	496,833,460	488,722,910	8,110,550
	사용료수입	11,643,813,000	11,643,813,000	10,375,619,530	10,162,561,430	213,058,100
	수수료수입	14,390,368,000	14,390,368,000	14,490,743,890	14,490,678,890	65,000
	사업수입	1,048,550,000	1,048,550,000	844,330,000	844,330,000	
	징수교부금수입	25,610,584,000	25,610,584,000	27,704,619,700	27,704,619,700	
	이자수입	606,496,000	606,496,000	1,392,293,300	1,392,241,720	51,580
임시적세외수입		20,373,859,000	20,373,859,000	70,784,576,140	23,881,776,880	46,902,799,260
	재산매각수입	336,537,000	336,537,000	5,779,197,910	3,675,430,360	2,103,767,550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부담금	110,000,000	110,000,000	114,887,890	78,276,870	36,611,020
	과징금및과태료등	7,936,667,000	7,936,667,000	13,383,303,350	6,425,444,090	6,957,859,260
	기타수입	1,097,479,000	1,097,479,000	3,015,104,310	2,746,304,080	268,800,230
	지난연도수입	10,893,176,000	10,893,176,000	48,492,082,680	10,956,321,480	37,535,761,200
지방교부세		4,006,889,000	4,006,889,000	5,125,301,900	5,125,301,900	
	지방교부세	4,006,889,000	4,006,889,000	5,125,301,900	5,125,301,900	
조정교부금등		26,625,685,000	26,625,685,000	26,995,156,430	26,995,156,43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6,625,685,000	26,625,685,000	26,995,156,430	26,995,156,430	
보조금		124,464,120,000	124,464,120,000	122,539,473,220	122,539,473,220	
	국고보조금등	66,611,099,000	66,611,099,000	65,427,071,970	65,427,071,970	
	시·도비보조금등	57,853,021,000	57,853,021,000	57,112,401,250	57,112,401,25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642,498,000	77,947,380,400	77,847,140,275	77,847,140,275	
	보전수입등	47,642,498,000	77,947,380,400	77,847,140,275	77,847,140,275	
	잉여금	44,190,713,000	44,190,713,000	44,190,712,069	44,190,712,069	
	전년도이월금	3,451,785,000	33,756,667,400	33,656,428,206	33,656,428,206	

(2)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00,340,079,000	430,644,961,400	338,316,703,205	40,516,416,530	51,811,841,665
일반공공행정	24,911,057,000	24,949,017,000	20,572,086,598	1,829,355,220	2,547,575,182
입법및선거관리	1,200,047,000	1,200,047,000	1,032,381,774		167,665,226
지방행정·재정지원	918,345,000	918,345,000	779,949,330		138,395,670
일반행정	22,792,665,000	22,830,625,000	18,759,755,494	1,829,355,220	2,241,514,286
공공질서및안전	4,122,347,000	4,223,452,000	3,156,685,810	625,140,490	441,625,700
재난방재·민방위	4,122,347,000	4,223,452,000	3,156,685,810	625,140,490	441,625,700
교육	7,852,766,000	7,852,766,000	7,405,214,077		447,551,923
유아및초중등교육	5,795,860,000	5,795,860,000	5,538,312,850		257,547,150
평생·직업교육	2,056,906,000	2,056,906,000	1,866,901,227		190,004,773
문화및관광	19,519,850,000	22,508,181,340	18,202,575,725	3,205,175,740	1,100,429,875
문화예술	4,559,086,000	4,569,156,000	4,486,455,830	19,780,000	62,920,170
관광	1,211,128,000	1,324,178,000	802,332,950	500,000,000	21,845,050
체육	11,764,215,000	12,903,162,000	11,910,571,695	368,073,000	624,517,305
문화재	1,985,421,000	3,711,685,340	1,003,215,250	2,317,322,740	391,147,350
환경보호	26,399,295,000	28,285,948,610	26,057,533,172	601,888,500	1,626,526,938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상하수도·수질	1,955,007,000	2,905,399,290	2,189,963,042	429,997,000	285,439,248
	폐기물	24,238,853,000	25,175,114,320	23,680,792,540	171,891,500	1,322,430,280
	대기	60,937,000	60,937,000	51,290,400		9,646,600
	환경보호일반	144,498,000	144,498,000	135,487,190		9,010,810
사회복지		113,762,349,000	117,856,215,000	107,844,294,800	4,176,091,080	5,835,829,120
	기초생활보장	20,555,865,000	20,555,865,000	20,104,902,060		450,962,940
	취약계층지원	13,602,400,000	13,602,400,000	12,748,211,227	200,366,000	653,822,773
	보육·가족맞여성	37,699,065,000	39,422,931,000	36,579,967,153	213,469,820	2,629,494,027
	노인·청소년	36,970,511,000	39,280,511,000	33,894,222,440	3,747,255,260	1,639,033,300
	노동	3,638,912,000	3,638,912,000	3,236,726,220	15,000,000	387,185,780
	보훈	827,201,000	887,201,000	813,176,990		74,024,010
	사회복지일반	468,395,000	468,395,000	467,088,710		1,306,290
보건		8,906,503,000	9,141,580,000	8,108,710,210	121,555,440	911,314,350
	보건의료	8,530,527,000	8,765,604,000	7,754,120,990	121,555,440	889,927,570
	식품의약품안전	375,976,000	375,976,000	354,589,220		21,386,780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농림해양수산		690,855,000	690,855,000	468,485,650	198,988,000	23,381,350
	농업·농촌	386,533,000	386,533,000	365,928,650		20,604,350
	임업·산촌	304,322,000	304,322,000	102,557,000	198,988,000	2,777,000
산업·중소기업		8,774,121,000	11,018,805,360	7,271,974,642	2,948,490,200	798,340,518
	산업진흥·고도화	8,691,921,000	10,936,605,360	7,206,856,652	2,948,490,200	781,258,508
	에너지및자원개발	82,200,000	82,200,000	65,117,990		17,082,010
수송및교통		10,618,331,000	15,398,072,100	7,982,171,240	6,661,771,140	754,129,720
	도로	10,126,527,000	14,847,463,620	7,545,844,200	6,661,771,140	639,848,280
	대중교통·물류등기타	491,804,000	550,608,480	436,327,040		114,281,440
국토및지역개발		36,436,205,000	50,373,668,990	26,942,695,930	20,147,960,720	3,283,012,340
	지역및도시	36,436,205,000	50,373,668,990	26,942,695,930	20,147,960,720	3,283,012,340
예비비		29,924,942,000	29,924,942,000			29,924,942,000
	예비비	29,924,942,000	29,924,942,000			29,924,942,000
기타		108,421,458,000	108,421,458,000	104,304,275,351		4,117,182,649
	기타	108,421,458,000	108,421,458,000	104,304,275,351		4,117,182,649

다. 특별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51,964,137,000	75,899,675,000	120,249,165,074	75,554,272,836	44,694,892,23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48,930,000	248,930,000	614,169,711	262,826,330	351,343,381
세외수입			365,240,821	13,897,440	351,343,381
경상적세외수입			1,319,600	1,319,600	
이자수입			1,319,600	1,319,600	
임시적세외수입			363,921,221	12,577,840	351,343,381
가타수입			11,982,940	9,989,880	1,993,060
자녀연도수입			351,938,281	2,587,960	349,350,321
보조금	211,300,000	211,300,000	211,300,000	211,300,000	
국고보조금등	105,650,000	105,650,000	105,650,000	105,650,000	
시·도비보조금등	105,650,000	105,650,000	105,650,000	105,65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630,000	37,630,000	37,628,890	37,628,890	
보전수입등	37,630,000	37,630,000	37,628,890	37,628,890	
양여금	10,931,000	10,931,000	10,931,000	10,931,000	
전년도이월금	26,699,000	26,699,000	26,697,890	26,697,89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805,166,000	1,805,166,000	1,936,390,275	1,802,110,338	134,279,937
세외수입	32,186,000	32,186,000	171,111,155	36,831,218	134,279,937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경상적세외수입	32,186,000	32,186,000	36,831,218	36,831,218	
	이자수입	32,186,000	32,186,000	36,831,218	36,831,218	
	임시적세외수입			134,279,937		134,279,937
	자녀연도수입			134,279,937		134,279,93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72,980,000	1,772,980,000	1,765,279,120	1,765,279,120	
	보전수입등	1,772,980,000	1,772,980,000	1,765,279,120	1,765,279,120	
	양여금	1,665,680,000	1,665,680,000	1,665,679,120	1,665,679,120	
	용자금원금수입	107,300,000	107,300,000	99,600,000	99,600,000	
주차장특별회계		49,891,735,000	72,851,273,000	116,706,499,255	72,497,230,335	44,209,268,920
세외수입		18,128,936,000	18,128,936,000	61,997,112,930	17,787,844,010	44,209,268,920
	경상적세외수입	8,484,840,000	8,484,840,000	7,663,182,940	7,663,182,940	
	재산임대수입	21,116,000	21,116,000	21,436,700	21,436,700	
	사업수입	7,749,624,000	7,749,624,000	6,718,927,850	6,718,927,850	
	이자수입	714,100,000	714,100,000	922,818,390	922,818,390	
	임시적세외수입	9,644,096,000	9,644,096,000	54,333,929,990	10,124,661,070	44,209,268,920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과징금및과태료등	4,527,300,000	4,527,300,000	8,711,896,350	5,340,904,620	3,370,991,730
	기타수입	1,417,680,000	1,417,680,000	1,486,743,090	1,486,743,090	
	지난연도수입	3,699,116,000	3,699,116,000	44,135,290,550	3,297,013,360	40,838,277,190
조정교부금등		3,500,000	3,500,00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500,000	3,500,000			
보조금		463,769,000	463,769,000	454,319,000	454,319,000	
	시·도비보조금등	463,769,000	463,769,000	454,319,000	454,319,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295,530,000	54,255,068,000	54,255,067,325	54,255,067,325	
	보전수입등	31,295,530,000	54,255,068,000	54,255,067,325	54,255,067,325	
	양여금	31,289,808,000	31,289,808,000	31,289,807,825	31,289,807,825	
	전년도이월금	5,722,000	22,965,260,000	22,965,259,500	22,965,259,500	
기반시설특별회계		18,306,000	994,306,000	992,105,833	992,105,833	
세외수입		15,606,000	15,606,000	13,406,040	13,406,040	
	경상적세외수입	15,606,000	15,606,000	13,406,040	13,406,040	
	이자수입	15,606,000	15,606,000	13,406,040	13,406,04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00,000	978,700,000	978,699,793	978,699,793	
	보전수입등	2,700,000	978,700,000	978,699,793	978,699,793	
	양여금	2,700,000	978,700,000	978,699,793	978,699,793	

(2)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51,964,137,000	75,899,675,000	18,992,256,041	8,762,070,920	48,145,348,03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48,930,000	248,930,000	194,244,570		54,685,430
사회복지	210,202,000	210,202,000	164,974,960		45,227,040
기초생활보장	210,202,000	210,202,000	164,974,960		45,227,040
기타	38,728,000	38,728,000	29,269,610		9,458,390
기타	38,728,000	38,728,000	29,269,610		9,458,39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805,166,000	1,805,166,000	24,400,000		1,780,766,000
사회복지	1,805,166,000	1,805,166,000	24,400,000		1,780,766,000
기초생활보장	1,805,166,000	1,805,166,000	24,400,000		1,780,766,000
주차장특별회계	49,891,735,000	72,851,273,000	18,773,611,471	8,762,070,920	45,315,590,609
수송및교통	45,655,634,000	68,615,172,000	15,246,866,141	8,762,070,920	44,606,234,939
대중교통·물류등기타	45,655,634,000	68,615,172,000	15,246,866,141	8,762,070,920	44,606,234,939
기타	4,236,101,000	4,236,101,000	3,526,745,330		709,355,670
기타	4,236,101,000	4,236,101,000	3,526,745,330		709,355,670
기반시설특별회계	18,306,000	994,306,000			994,306,000
국토및지역개발	18,306,000	994,306,000			994,306,000
지역및도시	18,306,000	994,306,000			994,306,000

3. 주민 부담 지방세액

지방세실수납액	인구	주민 1인당 부담 지방세액
122,607,477,000원	125,709명	975,328원

4. 지방채 등 채무관리 현황

- 가. 채무 현황 : 우리구 채무 없음
- 나. 채무부담행위 : 우리구 채무부담행위 없음
- 다. 채권 현황 : 융자금 등 23,006,264,876원

5. 기금운용 상황

(단위 : 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1)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조성액 (1)+(2)
		계(2)=(3)-(4)	조성액(3)	사용액(4)	
합계	21,916,926,796	△71,968,430	9,777,629,730	9,849,598,160	21,844,958,366
체육진흥기금	104,861,963	72,420,862	147,594,962	75,174,100	177,282,825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1,974,590,635	38,430,756	38,430,756		2,013,021,391
중소기업육성기금	6,119,608,206	△928,051,956	5,881,378,044	6,809,430,000	5,191,556,250
노인복지기금	2,076,410,306	△33,807,210	39,192,790	73,000,000	2,042,603,096
자활기금	792,951,036	77,107,976	95,807,776	18,699,800	870,059,012
양성평등기금	1,346,086,197	△655,525	24,328,375	24,983,900	1,345,430,672
환경미화원자녀학자대여기금	282,759,090	99,358,840	137,980,840	38,622,000	382,117,930
재난관리기금	4,555,956,507	321,416,695	1,269,376,125	947,959,430	4,877,373,202
도로굴착복구기금	1,651,223,441	499,954,482	1,404,023,992	904,069,510	2,151,177,923
식품진흥기금	1,954,604,706	54,199,045	286,558,465	232,359,420	2,008,803,751
옥외광고정비기금	1,057,874,709	△272,342,395	452,957,605	725,300,000	785,532,314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980,672,973,888	6,508,878,789	881,504,048	1,986,300,348,629
행정 재산	계	1,971,149,795,634	6,508,878,789	757,104,048	1,976,901,570,375
	공공용재산	1,711,914,783,776	5,634,981,819	757,104,048	1,716,792,661,547
	공용재산	259,235,011,858	873,896,970		260,108,908,828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		9,523,178,254		124,400,000	9,398,778,254

7.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수량/개, 금액/원)

구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소 계	구 매	소 계	매 각	
수량	981	51	51	38	38	994
금액	8,209,611,500	473,204,000	473,204,000	83,431,652	83,431,652	8,599,383,848

8. 재무제표

(1)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7년	2,319,772,103,851	26,657,932,228	2,293,114,171,623	361,566,551,742	335,216,517,931	-26,350,033,811
2016년	2,287,811,199,531	25,210,116,825	2,262,601,082,706	353,880,490,015	319,730,227,563	-34,150,262,452
증 감	31,960,904,320	1,447,815,403	30,513,088,917	7,686,061,727	15,486,290,368	7,800,228,641

(2) 재정상태표

(단위 : 원)

구 분	2017년		2016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I. 자산총계	2,319,772,103,851	100.00	2,287,811,199,531	100.00
유동자산	272,704,060,201	11.76	259,712,875,936	11.35
투자자산	20,093,510,394	0.87	19,822,960,333	0.87
일반유형자산	164,430,081,771	7.09	163,917,642,895	7.16
주민편의시설	428,212,565,458	18.46	410,384,543,057	17.94
사회기반시설	1,429,298,179,097	61.61	1,429,635,653,112	62.49
기타비유동자산	5,033,706,930	0.21	4,337,524,198	0.19
II. 부채총계	26,657,932,228	100.00	25,210,116,825	100.00
유동부채	5,279,016,926	19.80	7,141,790,420	28.33
기타비유동부채	21,378,915,302	80.20	18,068,326,405	71.67
III. 순자산총계 (I - II)	2,293,114,171,623		2,262,601,082,706	

(3) 재정운영표

(단위 : 원)

구 분	2017년		2016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I. 비용총계	335,216,517,931	100.00	319,730,227,563	100.00
인건비	114,991,068,461	34.30	108,364,097,718	33.89
운영비	71,129,980,000	21.22	75,790,565,689	23.70
정부간이전비용	8,837,395,720	2.64	8,397,957,950	2.63
민간등이전비용	119,594,546,111	35.68	114,246,198,255	35.73
기타비용	20,663,527,639	6.16	12,931,407,951	4.05
II. 수익총계	361,566,551,742	100.00	353,880,490,015	100.00
자체조달수익	207,739,899,274	57.46	228,454,379,486	64.56
정부간이전수익	152,154,253,397	42.08	125,032,588,404	35.33
기타수익	1,672,399,071	0.46	393,522,125	0.11
III. 운영차액(I - II)	-26,350,033,811		-34,150,262,452	

9. 성과보고서

(단위 : 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 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9	59	136	17	75	44	357,308,959,246	334,666,004,296	22,642,954,950
감사담당관	1	1	2	0	1	1	169,801,900	169,031,740	770,160
공보실	1	1	2	0	2	0	810,147,440	772,752,581	37,394,859
행정관리국	1	13	25	3	11	11	122,582,738,954	119,350,876,632	3,231,862,322
기획재정국	1	7	16	2	10	4	13,753,262,622	10,870,719,684	2,882,542,938
복지환경국	1	14	29	2	14	13	139,783,433,280	135,406,176,186	4,377,257,094
도시관리국	1	8	20	2	12	6	27,685,620,085	23,280,845,925	4,404,774,160
안전건설국	1	8	22	3	16	3	33,750,849,147	27,409,004,038	6,341,845,109
보건소	1	6	18	4	8	6	16,188,067,294	14,871,292,110	1,316,775,184
구의회	1	1	2	1	1	0	2,585,038,524	2,535,305,400	49,733,124

10.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단위 : 원)

구 분	세 입	세 출	자산(C)	부채(D)
계=a+b-A	545,914,008,361	392,683,577,026	2,324,508,665,624	27,916,200,300
자치단체(a)	540,157,773,717	387,744,095,382	2,319,772,103,851	26,657,932,228
지방공공기관(b)	27,858,608,856	27,041,855,856	5,496,561,773	1,258,268,072
내부거래(A)	22,102,374,212	22,102,374,212	760,000,000	

※ 자치단체(a)=일반회계+특별회계(4)+기금(11)-회계기금간전출금
지방공공기관(b)=중구시설관리공단+중구문화재단+인재육성장학재단
내부거래(A)=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간

공 고

●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18-638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2018. 4. 17. 시행)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8조)
- 나.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안 제9조)
- 다. 가족 채용 제한(안 제10조)
- 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1조)
- 마.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안 제12조)
- 바.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안 제19조)
- 사.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22조)
- 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7조)
- 자.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안 제25조)
- 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 경조사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안 제23조 ②)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안 제24조)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안 제24조 ③)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안 제24조 ②)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구체화(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 3396-4406, FAX: 3396-9013, 메일: kya12345@ 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정책·사업·보조금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중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등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구민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구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전문성 등) ①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상급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금전거래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나. 구 퇴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조치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청 대상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구청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① 구청장은 구 또는 구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구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구청장은 구 또는 구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구 또는 구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

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과 관련한 적용대상 직무분야 및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2. 공동주택, 민영주택 및 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3. 그 밖에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1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청사·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규칙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구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③ 공무원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⑧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⑨ 행동강령책임관은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반기별로 분석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 규정 위반자는 징계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제4항 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 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구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 등) 제28조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구청장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3조제2항제2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4조제1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 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등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 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별지 제6호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 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별지 제7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 · 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p>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p> <p>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p>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8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신고자 : (인)					

[별지 제9호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위 (직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명	직책
	소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성별)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13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_____ 반환금액 : _____ 반환방법 : _____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	직 위 (직 급)
-----	----	----	---------------

신 고 사 항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	------	--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

물품 계약

용역 계약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계약체결일	
------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대상	계약체결일	
----	-------	--

거래원인	거래 금액	
------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별지 제16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7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 고 취 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0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